

의안번호	2215473
의 퇴 인	강명구의원
회 답 일	2026.4.24.
추계번호	25B71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연결하여 주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및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춘 이동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0억 9,700만원, 2031년 3억 2,8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22억 6,600만원(4억 5,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안 제16조제2항)	1,097	213	309	318	328	2,266	453

주 1.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업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향후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6조제2항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연결하여 주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추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바탕으로 추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연결하여 주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통신망 등을 갖추지 못한 이동지원센터에 이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모든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정보통신망·전화자동응답시스템·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가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시·군 이동지원센터에서 예약 배차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들 이동지원센터에서 해당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때 소요비용을 추산함
-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등 적용¹⁾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 부칙과 사업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5.11.)

(단위: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명목임금상승률	3.2	3.3	3.3	3.3	3.3	3.3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²⁾를 바탕으로 4개 시·군 이동지원센터에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상담직원 등 예약·배차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설치비용은 기 구축사례의 소요비용을 참고하여 추산함
 - 유사사례: 세종시 이동지원센터 정보망 구축·운영비(27.4백만원)
 - 정보통신망(앱) 구축·운영비 174.5백만원
 - 전화자동응답시스템 구축·운영비 48.5백만원
 - 상담직원 인건비(1명): 51.6백만원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4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시스템 초기 구축비용과 연간 운영비(유지보수 및 인건비)로 구분하여 추산함
 -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4개 이동지원센터에 설치
 - 정보통신망(앱) 구축비: 개소당 174.5백만원(2027년 1회 발생)
 -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비: 개소당 48.5백만원(2027년 1회 발생)
 - 시스템 유지보수비: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SW개발비 기준 용역 유지관리 요율에 따라 10%로 가정³⁾하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7년 이후 무상 하자보수기간(1년)을 거쳐 2029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⁴⁾
 - (상담직원 인건비) 개소당 전담 상담직원 1인을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함
 - 산출근거: 2027년 기준 인건비 51.6백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 적용

2)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의성군, 성주군 등 4개 이동지원센터에 예약 배차시스템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2026.4.)

3) 요율제 유지관리비는 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관리 사업의 대가산정 시 적용하는 방법으로, 적용요율은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요율(10~15%)을 준용
(자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8.)

4)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5.에 따르면 S/W의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보수하도록 함

- (추계결과)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연결하여 주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 $A=(a+b) \times c$	891	—	89	91	93	1,163
시스템 구축비용(a)	223	—	—	—	—	—
유지보수비(b)	—	—	22	23	23	—
물량 (c, 개소)	4	4	4	4	4	
인건비($B=d \times e$)	207	213	220	227	235	1,103
단가(d)	51.6	53.3	55.1	56.9	58.7	—
물량(e)	4	4	4	4	4	—
추가재정소요 ($A+B$)	1,097	213	309	318	328	2,266

주 1.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업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향후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업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향후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